

보도자료

2011년 5월 27일(금)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안건]

가.,나. 뉴미디어정책과 김정원과장(2450)

[보고안건]

가. 뉴미디어정책과 김정원과장(2450) 나. 편성평가정책과 권병욱과장(2350)

2011년 제33차 위원회 결과 대변인 브리핑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과 보고안건 2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가. 2011년도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 재허가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첨부1 참조)

- 올해 12월 31일로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한국방송공사 등 6개 수도권역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기본계획안을 심의하여 의결함

< 재허가 대상 사업자 >

사 업 자 명	대 표 자	방송구역
한국방송공사	김인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주)문화방송	김재철	
(주)에스비에스	우원길	
(주)와이티엔디엠비	배석규	
한국디엠비(주)	김경선	
유원미디어(주)	주상균·박경수	

나. 2011년도 종합유선방송사업 재허가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첨부2 참조)

- '12년 1월에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주)씨앤앰우리케이블티브이 등 4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기본계획안을 심의하여 의결함

〈 재허가 대상 사업자 〉

티브로드 계열	씨앤엠 계열	개별
(주)티브로드홀딩스중부방송	(주)씨앤엠우리케이블티브이	(주)영서방송 제이씨엔올산중앙방송(주)

[보고안전]

가. 2010년도 SO의 PP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에 관한 사항 (첨부3 참조)

-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과 관련한 재허가 조건^{*}을 부여받은 95개 SO에 대해 재허가 조건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 ※ 연간 총 방송수신료의 25% 이상을 PP 프로그램 사용료로 지급할 것

나. 방송프로그램 국내제작 인정기준(안) 고시에 관한 사항 (별도 보도 자료 참조)

- '11. 7. 1. 한-EU FTA 잠정발효 대비하여 방송법 시행령 제57조 제6항에 따른 방송프로그램 국내제작 인정기준 및 제도 운영방안 고시안을 마련하여 보고함

< 첨부1 >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 재허가 계획안

□ 재허가 대상 : 6개 사업자

사 업 자 명	대 표 자	허가만료일	방송구역
한국방송공사	김인규	'11.12.31.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주)문화방송	김재철	'11.12.31.	
(주)에스비에스	우원길	'11.12.31.	
(주)와이티엔디엠비	배석규	'11.12.31.	
한국디엠비(주)	김경선	'11.12.31.	
유원미디어(주)	주상균·박경수	'11.12.31.	

□ 심사위원회 구성

- 위원회 위원 또는 심사에 필요한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함(8인 내외)
 - 방송·미디어, 법률, 경영·회계, 기술, 시청자·소비자 분야 등을 포함
-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자격조건에 적합하고, 심사대상 사업자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인사로 위촉함
- 심사위원장은 상임위원들과 협의하여 방송통신위원장이 결정함

□ 심사항목 및 배점

심 사 항 목	평가지표	배 점
I. 방송평가	계 량	400
II. 운용실적 및 사업계획	계량·비계량	600
1.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비계량	170
2.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정성	비계량	80
3.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비계량	50
4.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비계량	70
5. 재정 및 기술적 능력	비계량	170
6.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및 이행여부	비계량	40
7. 허가 또는 승인 조건 및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비계량	20
8. 방송통신위원회 시정명령 횟수와 시정명령 불이행 사례	계 량	감점
합 계		1,000

- ※ 감점기준 등 세부적인 심사기준은 심사 전 심사위원회 의결로 결정
- ※ 방송법(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심사항목 및 시청자 의견을 심사에 반영하기 위해 '방송평가'(I) 내용 및 시청자 의견 청취결과(3번) 관련 배점을 신규로 추가
- ※ DMB 매체 특성을 고려한 사업자의 프로그램 제작·확보 의지를 중점 평가하기 위해 방송프로그램 기획·제작(2번) 항목 배점을 조정

□ 재허가 여부 결정

- 심사 결과,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 '재허가'를 의결하며,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하여는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를 의결함
-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특정 심사항목에 대한 평가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하여 해당 항목의 성실한 이행을 강제하거나, 재허가 신청서 및 제출서류(서약서 등)에 기재된 내용의 확실한 이행을 위해 조건 등을 부과할 수 있음

□ 향후 계획

- '11. 6~9월 : 신청서 접수, 시청자 의견 접수
- '11. 10월 : 재허가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11. 11월 : 재허가 심의·의결

< 첨부2 >

종합유선방송사업 재허가 기본계획안

□ 재허가 심사대상 : 4개 사업자

○ '11. 11월 허가만료 : 1개사 / ○ '11. 12월 : 1개사 / ○ '12. 1월 : 2개사

<SO별 재허가 대상 사업자>

티브로드 계열	씨앤엠 계열	개별
(주)티브로드홀딩스중부방송	(주)씨앤엠우리케이블티브이	(주)영서방송 제이씨엔올산중앙방송(주)

□ 심사위원회 구성

- 위원회 위원 또는 심사시 필요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9인 이내)
 - 방송, 방송평가, 법률, 경영, 회계, 기술, 시청자소비자 등의 분야 포함
-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자격조건에 적합하고, 심사대상 사업자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인사로 위촉
- 심사위원장은 상임위원들과 협의하여 방송통신위원장이 결정

□ 심사항목 및 항목별 배점

심사항목 및 평가내용	배 점	평가지표
1. 방송평가위원회 방송평가 결과	400	계량
2. 방송의 공적 책임·공공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100	비계량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정성	120	비계량
4.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100	비계량
5. 조직 및 인력운영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60	비계량
6. 재정 및 기술적 능력	120	비계량
7.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및 이행여부	50	비계량
8. 허가 또는 승인 조건 및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50	비계량
9.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 횟수와 시정명령 불이행 사례	감점처리	계량
합 계	1,000	

- ※ 심사항목별 세부항목과 배점기준, 감점처리 기준은 심사위원회 의결로 결정하며, 방송평가와의 중복 최소화를 위해 방송평가 배점 조정('10년도의 경우, 500점 배점)
- ※ 재허가 기간 동안의 준수사항 평가를 위하여 허가 또는 승인 조건 및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8번) 항목을 신설
- ※ 종합유선방송사업의 디지털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정성(3번), 재정 및 기술적 능력(6번) 항목의 배점 강화

□ 재허가 여부 결정

- 재허가 심사결과 650점 이상 획득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허가'하되, 특정항목의 평가점수가 40%에 미달하는 등의 경우 조건 부과 가능
- 650점 미만인 경우 재허가를 거부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

□ 향후 일정

- '11. 8월까지 : 신청서 접수, 시청자 의견 수렴
- '11. 9월 : 재허가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11. 10월 : 재허가 심의·의결

2010년도 SO의 PP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현황

□ 주요 경과

- '11. 1. 15 ~ 3. 31 : SO 실태점검(재허가 조건을 부여받은 95개 SO 대상)
- '11. 3. 10 : 행정처분 사전예고 통지(7개 SO) 및 의견 접수
 - ※ 7개 SO 모두 처분예고 통지 후 재허가 조건을 이행함

□ 주요 내용

- (조건 이행여부) 전체 95개 SO 모두 '10년도 방송수신료의 25% 이상을 PP 프로그램 사용료로 지급하여 재허가 조건을 이행하였음
 - '10년도 95개 SO가 지급한 총 PP 프로그램 사용료는 3,009억원으로 전체 방송수신료 1조1,571억원의 26.0%를 차지
- (사용료 배분비율) 전년 대비 PP 프로그램 사용료 총액은 증가하였으나 기본채널의 비중은 감소하고 유료채널 및 VOD의 비중은 확대
 - 전체 PP 프로그램 사용료 중 기본채널에 2,269억원(75.4%), 유료채널에 155억원(5.2%), VOD에 585억원(19.4%) 배분됨
 - ※ 기본채널은 묶음상품에 포함되어 판매되는 채널, 유료채널은 묶음상품과 별도로 수신료를 지불하는 채널, VOD는 주문형 비디오를 의미

<2010년도 방송수신료 대비 PP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율(>)

순번	SO명	지급율	순번	SO명	지급율	순번	SO명	지급율
1	지에스강남방송	32.0	33	씨앤엠중앙케이블티비	25.3	65	큐릭스광진성동방송	25.0
2	씨제이헬로비전북인천방송	31.7	34	씨앤엠노원케이블티비	25.2	66	티브로드홀딩스남동방송	25.0
3	씨제이헬로비전	31.5	35	씨앤엠서초케이블티비	25.2	67	티브로드홀딩스중부방송	25.0
4	한국케이블티비포항방송	30.4	36	씨제이헬로비전대구동구방송	25.2	68	티브로드홀딩스전주방송	25.0
5	씨제이헬로비전드림씨티방송	30.1	37	씨엠비광주방송동부지점	25.2	69	티브로드홀딩스수원방송	25.0
6	씨제이헬로비전중부산방송	30.0	38	현대에이치씨엔동작방송	25.2	70	티브로드기남방송	25.0
7	한국케이블티비광주방송	30.0	39	씨엠비광주방송	25.1	71	티브로드낙동방송	25.0
8	씨제이헬로비전마산방송	29.9	40	씨제이헬로비전대구수성방송	25.1	72	씨씨에스충북방송	25.0
9	씨제이헬로비전은평방송	29.5	41	하나방송	25.1	73	큐릭스서대문방송	25.0
10	씨제이헬로비전해운대기장방송	29.0	42	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	25.1	74	티브로드동남방송	25.0
11	씨제이헬로비전경남방송	28.9	43	남인천방송	25.1	75	큐릭스	25.0
12	아름방송네트워크	28.1	44	씨엠비동서방송	25.1	76	현대에이치씨엔경북방송	25.0
13	씨제이헬로비전가야방송	27.5	45	씨엠비대전방송동대전지점	25.1	77	현대에이치씨엔	25.0
14	씨제이헬로비전금정방송	26.8	46	씨엠비대전방송	25.1	78	현대에이치씨엔금호방송	25.0
15	씨앤엠동서울케이블티비	26.7	47	티씨엔대구방송	25.1	79	현대에이치씨엔새로넷방송	25.0
16	동서디지털방송	26.7	48	대구케이블방송	25.0	80	현대에이치씨엔서초방송	25.0
17	씨앤엠경동케이블티비	26.5	49	씨제이헬로비전영동방송	25.0	81	현대에이치씨엔충북방송	25.0
18	서경방송	26.3	50	씨엠비한강케이블티비	25.0	82	신라케이블방송	25.0
19	씨앤엠우리케이블티비	26.3	51	영서방송	25.0	83	티브로드에이비씨방송	25.0
20	씨앤엠중앙케이블티비	26.2	52	씨엠비대구동부방송	25.0	84	노원케이블종합방송	25.0
21	씨제이헬로비전중앙방송	25.9	53	한국케이블티비제주방송	25.0	85	티브로드서부산방송	25.0
22	씨제이헬로비전충남방송	25.8	54	현대에이치씨엔부산방송	25.0	86	티브로드한빛방송	25.0
23	한국케이블티비푸른방송	25.8	55	씨엠비대구수성방송	25.0	87	티브로드강서방송	25.0
24	씨앤엠용산케이블티비	25.7	56	씨앤엠경기동부케이블티비	25.0	88	큐릭스종로중구방송	25.0
25	씨앤엠북부케이블티비	25.7	57	씨엠비전남방송	25.0	89	큐릭스대구방송	25.0
26	씨앤엠서서울케이블티비	25.6	58	한국케이블티비호남방송	25.0	90	티브로드동대문케이블방송	25.0
27	씨앤엠구로케이블티비	25.6	59	강원방송	25.0	91	티브로드서해방송	25.0
28	씨제이헬로비전영남방송	25.6	60	충청방송	25.0	92	금강방송	25.0
29	씨앤엠경기케이블티비	25.5	61	한국케이블티비나라방송	25.0	93	한국케이블티비모두방송	25.0
30	씨앤엠강동케이블티비	25.3	62	씨제이헬로비전아라방송	25.0	94	한국케이블티비전북방송	25.0
31	씨앤엠마포케이블티비	25.3	63	티브로드새롬방송	25.0	95	지에스울산방송	25.0
32	씨앤엠송파케이블티비	25.3	64	큐릭스대경방송	25.0			

□ 향후 계획

- '11. 9월 : PP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기준과 범위에 대한 개선안 마련
 - PP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율(현행 25%)의 적정기준 및 유료채널, VOD의 PP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범위 제외 여부 등 검토
- '11. 10월 : 최초 조건을 부과한 이후 재허가가 도래하는 SO에 대해 PP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기준 개선안 적용